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중오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300석 이상의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으로 하고,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의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7).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을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으로 하였음에도, 부칙에서 설치 의무규정이 적용되는 공연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여 개정 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임.

이에 같은 법의 입법례¹⁾를 참고하여 ‘방화막 설치에 관한 적용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였음.

1) 부칙 <제18855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2022. 5. 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막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제2조(방화막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음(주서본 참조).

Ⅲ. 관계기관 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연장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화막 설치 의무대상 공연장을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중규모 공연장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방화막 설치를 위한 업계의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황이며,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전문위원 이 세 진)